

勞 動 經 濟 論 集  
 第37卷 第3號, 2014. 9, pp.1~44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가구구성과 소득 불평등\*

김 대 일\*\* · 이 석 배\*\*\* · 황 운 재\*\*\*\*

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소득 불평등도, 소득 공유, 사적이전지출

논문 접수일: 2014년 5월 6일, 논문 수정일: 2014년 7월 1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3일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지원과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SSK 사업 2차년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2-S1A3-A2033467). 저자들은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 심사평을 해 주신 두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의 김경배, 박현민에게 감사드린다.

\*\* (교신 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dikim@snu.ac.kr)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sokbae@gmail.com)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whang@snu.ac.kr)

## I. 서론

가구소득은 대체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를 야기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여건의 변화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지만, 가구구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에 의해 노동시장의 불평등도가 가구소득의 불평등도에 일대일로 반영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 성과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로 연계(mapping)되는 양상에 있어서 가구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 능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오는 추세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1990년대 중반 이후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관측되지 않는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미국 등에서 발생한 임금 불평등도 확대 양상과 유사하다.<sup>1)</sup> 특히 2000년대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임금밀도함수의 분포에 있어서는 중간층의 빈도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하위층과 상위층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sup>2)</sup> 이러한 임금불평등도 확대 추세에 대해 개도국과의 국제무역 확대를 그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기능 친화적 기술진보를 그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sup>3)</sup>

이와 같이 국제무역의 확대, 자본시장 개방 등 세계화 추세, 또는 기술진보에 따른 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 압력의 증대에 대해 그 경제사회의 구성원들이 가구구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일수록 정부의 복지지출 수요는 줄고, 그만큼 재정부담 감소에 따라 경제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urtless(1999)는 1979년 이후 미국 소득 불평등의 확대에서 한 부모가구(single-adult family)의 증가 등이 중요한 역할

1) 미국의 임금 불평등도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Katz and Murphy(199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임금밀도함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대일(2013)을 참조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연구 논문이 있으며, 국제무역 확대를 강조한 연구로는 Borjas and Ramey(1994), Feenstra and Hanson(1996), Wood(1995) 등을 참조할 수 있고, 기술진보를 강조한 연구로는 Lawrence and Slaughter (1993)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 분야를 상당히 잘 정리된 서베이 논문으로는 Cline(1997)을 고려할 수 있다.

을 하였음을 보임으로써 소득 불평등도에서 가구구성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있다.<sup>4)</sup> 이와 관련된 국내 주요 연구로는 반정호(2011)를 고려할 수 있다. 그는 소득 불평등 지표의 구성 분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구구성에서 노인가구 및 모자가구, 1세대 가구의 증가가 2000년대 전체 도시가구의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상당히 밀접히 연계된 결과로서 가구구성의 중요성이 강조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가구구성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Burtless(1999), 반정호(2011) 등의 기존 연구들은 가구 유형별 분포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의 변화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동기는 “왜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영향을 받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한다. 기존 연구들은 가구의 특성이나 규모별로 소득이 상이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가구 유형별 분포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를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Burtless(1999)는 1부모 가구의 비중 증가가, 반정호(2011)는 노인가구, 모자가구, 1세대 가구의 증가가 전체 소득 불평등도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기존 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선행조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가구 유형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러한 차이가 개인 구성원의 소득격차로 얼마나 연계되는지, 이러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격차를 가구구성의 내생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가구구성원 개인의 소득 불평등도가 영향 받게 되는 전반적인 메커니즘에서 연구의 동기를 찾고 있다. 이는 가구 유형 및 구성 양상은 시장에서의 불평등도 확대 압력이 가구를 통한 소득 공유 과정을 거치며 가구구성원들의 소득 불평등도에 투영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와 같이 이 메커니즘에 따라 가구구성원들의 소득 불평등도는 전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논의를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근로자로서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sup>5)</sup> 이 사회가 모두 1인 가구로 구성된다면, 즉, 개개인이 각각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면 임금 불평등도와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4) 미국의 가구소득 불평등도에서 가구구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Lerman(1996), Martin(2006) 등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Martin(2006)은 1976년과 2000년 사이 미국 소득 불평등도 확대의 41%를 가구구성의 변화가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5) 물론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외에 자산소득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만 고려해 보기로 한다.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무작위로 2인씩 한 가구를 구성하여 소득을 공유하면 그만큼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는 임금 불평등도에 비해 낮을 것이고, 이때 가구구성이 무작위가 아니라 두 구성원의 임금 간에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도록 가구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또한 가구 규모가 2인에서 3인, 4인으로 계속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가 구성되는 양식에 따라 가구구성이 소득 불평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가 결정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불평등도 압력이 동일하여도, 그 사회의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또한 가구 내에서 취업자 분포와 소득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양상인가 등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경제에서 구성원들이 불평등 압력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 불균형 심화를 억제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최근의 추세는 어떠한지 등을 식별하는 것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 $i$ )의 소득을  $y_i$ 라고 할 때, 가구( $h$ )의 가구소득은  $\sum_{i \in h} y_i$ 가 되고, 소득 불평등도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는 균등화된 1인당 소득  $\sum_{i \in h} y_i / \sqrt{N_h}$ 에 기초한다는 점( $N_h$ 은 가구원수)에서,  $y_i$ 의 불평등에서  $\sum_{i \in h} y_i$ 의 불평등으로의 연계, 그리고  $\sum_{i \in h} y_i / \sqrt{N_h}$ 의 불평등으로의 연계를 단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sup>6)</sup> 이러한 각 단계에서는 부부 및 가구구성원들 소득의 상관관계, 가구원수 및 구성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부부소득의 경우 가구 내 전문화 이론에 기초하여 Becker(1973; 1974; 1981)는 부부간 임금소득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이는 노동시장 불평등이 가구구성을 통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한다. 다만 Becker의 예측에 대한 실증근거는

6) 물론 균등화된 1인당 소득지표가 개개인의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라는 전제 하에서만  $y_i$ 의 분포가 균등화된 1인당 소득지표의 분포로 투영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Lise and Seitz(2011)에서는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균등화된 1인당 소득지표와 같이 가구 내 소비 불평등을 간과하는 지표는 실제 불평등도를 (50%까지) 심각하게 과소 추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균등화된 1인당 소득지표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를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의 불평등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전제가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높지 않고 또한 부부소득의 상관관계 증가가 미국 가구소득 불평등도 확대의 한 요인이었다는 결과(Burtless, 1999)도 존재함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선별 혼인 assortative mating)의 강화가 1인당 소득 불평등도 확대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 이는 실증적으로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이슈라고 판단된다.7)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사회별로 어떠한 방식의 선별 혼인과 노동공급 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이 소득 불평등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이라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바울(2013)은 저소득가구의 여성 배우자 취업 증가가 2008년 이후 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맞벌이의 효과는 위에 설명한 “개인의 근로소득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8) 실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가구구성원의 추가 소득은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주의 소득과 추가적인 가구원의 소득의 관계를 살피고, 이에 따라 정의되는 1인당 취업소득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가구구성과 소득 불평등도의 실증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핵가족화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는 2인 이하 고연령 가구의 낮은 소득이 소득 불평등도에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가구구성을 통해 시장의 불평등 압력은 상당히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구 내 구성원의 추가 취업(added workers) 및 다수 가구원에 의한 소득 공유(income sharing), 그리고 다수 가구원에 의한 내구재 공동소비(collective consumption)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 압력이 가구소득 및 가구원 1인당 소득(소비)에 반영되는 효과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핵가족화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2인 이하 고연령 가구의 경우 소득 공유효과가 억제되어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소득 불평등도에 부정적으로 연계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간단한 가상적 추정에 의하면 핵가족 추세 하에서도 사적이전지출이 활성화되어 소득 공유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경우 고연령층의 소

7) Kremer(1997)는 PSID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교육 등에 기초한 선별 혼인(sorting)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지만, Fernandez and Rogerson(2001)는 선별 혼인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킬 수 있다는 동학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8) 이철희(2008)도 외환위기를 전후한 가구소득 불평등도 비교에서 배우자의 노동공급 변화가 가구 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Daly & Valletta, 2006).

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II. 가구소득의 구성과 1인당 소득지표

본 장에서는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요인들 가운데 시장에서의 근로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가구주의 소득과, 여기에 가구원들의 취업소득을 합한 가구 취업소득, 그리고 이에 가구원 수를 감안한 1인당 취업소득 및 균등화된 1인당 취업소득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sup>9)</sup> 이러한 비교를 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불평등이 가구구성 및 가구원 간 소득 공유 과정을 거쳐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효용) 불평등도로 투영되는 과정(mapping)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즉, 시장에서의 성과 불평등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들의 소득 불평등으로 직접 연계되지만, 맞벌이, 출산을 통해 가구구성 등의 과정을 거쳐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효용) 불평등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12년 전국가계조사 원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10,401개의 1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sup>10)</sup> 자료에서는 각 가구별로 가구주,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연평균 월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 이전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월 소득을 분석단위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계치는 모두 가중치를 사용한 값들로서 가구 수준의 통계에는 가구의 가중치를, 개인 수준의 통계에는 가구의 가중치를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주요 변수인 가구원 수의 경우 그 평균 값은 2.81명이고, 1인 가구의 비중은 20.3%이며, 2인 가구는 22.9%, 3인 가구는 21.0%, 4인 가구는 28.3%, 5인 이상 가구는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9) 통계청의 소득 불평등도 추정에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등을 합한 시장소득(market income)에 정부의 조세징수와 공적이전지출을 추가한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이 활용되는데, 본 장에서는 시장에서 생성되는 소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취업소득이란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히 설명한다.
- 10) 통계청에서는 본 자료에 놓여준 가구를 추가하여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를 추정하는데, 2012년 기준 통계청의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307이며, 농어가를 제외한 본 자료에서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300으로 추정되고 있다.

## 1. 가구주 및 가구원의 취업소득

일반적인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라 할 수 있는 가구주의 소득은 임금근로를 통한 근로소득과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료 수입 및 가구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취업소득(earnings)이라 칭하기로 한다. [그림 1]에서는 가구주의 취업소득의 밀도함수와 이에 임대료 및 자산소득을 더한 가구주 소득(head's income)의 밀도함수를 보이고 있다. 밀도함수 값은 가구주 취업소득의 평균( $\mu$ )과 표준편차( $\sigma$ )를 구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에 너비가 표준편차의 10%, 즉,  $0.1\sigma$ 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income cell)을 생성시키고, 각 구간에 해당 소득이 속한 가구의 빈도로 추정되었다. 대표의 횡축 값  $x$ 는  $(\mu + (x - .5)\sigma/10, \mu + (x + .5)\sigma/10)$ 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을 의미한다. 횡축 값이 0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은 가구주의 취업소득 평균( $\mu$ )을 포함한 소득 구간이며, -12는 가구주 취업소득이 0인 구간이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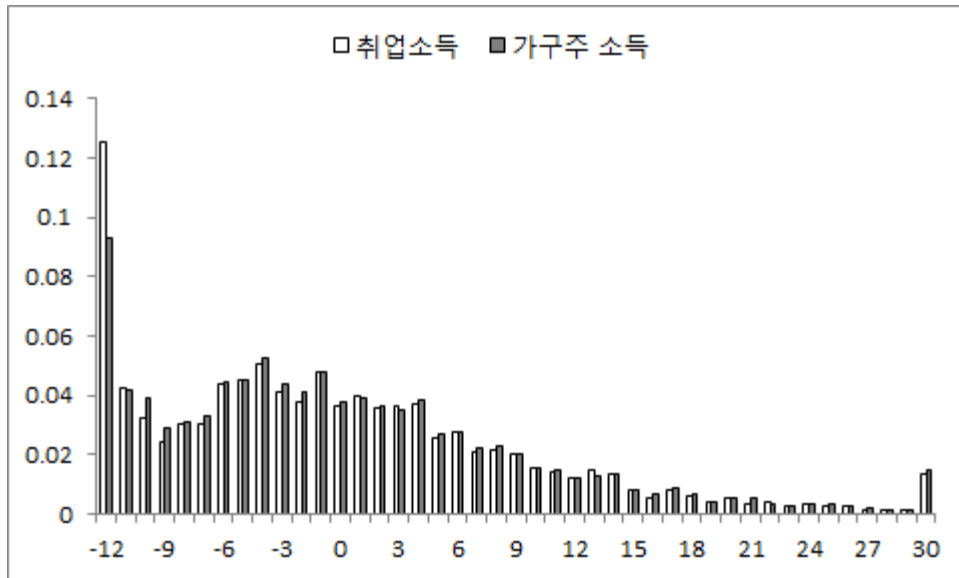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가구주의 취업소득이 0인 가구는 12.5%이고, 취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밀도함수는 대체로 오른쪽 꼬리가 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산소득 등을 추가한 가구주 소득의 경우, 소득이 0인 비중은 9.3%로 크게 하락하지만, 다른 소득 구간에서의 밀도 변화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2)</sup> 이와 같이 자산소득을 추가한 가구주 소득과 취업소득의 밀도함수가 거의 유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료 내에서 자산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인데, 따라서 앞으로는 가구주의 취업소득과 자산소득을 합한 가구주 소득(head's income)을 가구소득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사용한다.<sup>13)</sup> 이 가구주 소득은 “가구주가 그 가구의 유일한 취업자일 때”의 소득에 해당하며, 각 가구 내에서 가구구성 및 추가적인 노동공급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모든 밀도함수 그림에서 앞의 [그림 1]과 달리 가구주 취업소득이 아니라 가구주의 소득을 사용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한 소득 구간을 사용한다.

11) 이와 같이 소득 구간을 정의하는 방식은 김대일(2013)을 따랐다.

12) 가구주의 취업소득과 자산소득 간에는 약하게나마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소득효과가 존재함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13) 2012년의 경우 가구주 취업소득의 평균은 2,258.5천 원인데, 임대료 수입 및 자산소득의 평균은 74.1천 원으로 위와 같이 정의된 가구주 소득에서 후자의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그림 1] 가구주의 취업소득 및 자산소득을 추가한 소득의 분포(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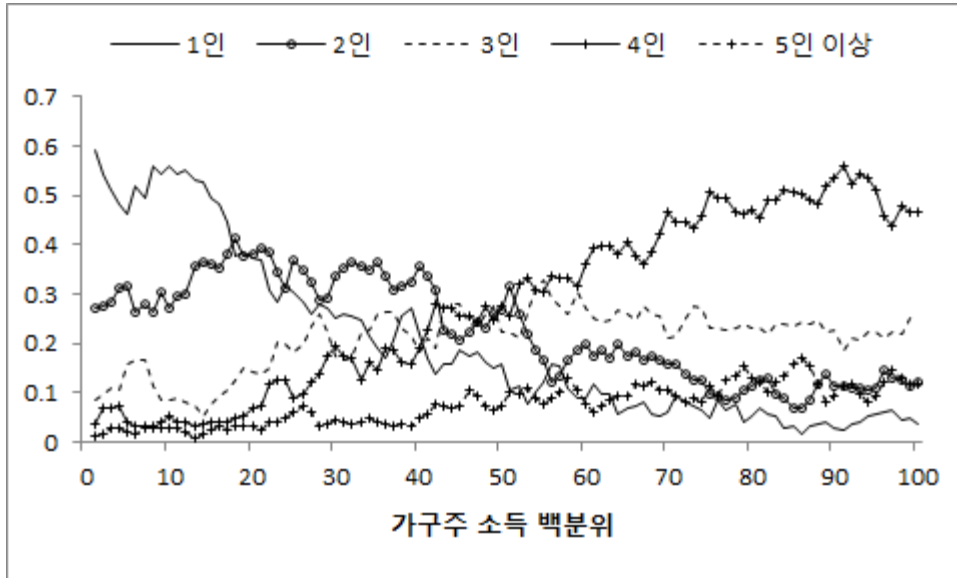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일반적으로 맞벌이 등, 가구주 이외에 가구원들이 추가적으로 취업한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들의 노동공급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도 가구소득에 포함되며, 이는 가구소득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단 추가 소득원이 있으려면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있어야 하므로 가구원 수의 분포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래 [그림 2]에서는 앞서 정의한 기준 소득이라 할 수 있는 가구주 소득의 백분위별로 가구원 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의 횡축은 가구주 소득 백분위(percentile)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가구주 소득이 높을수록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은 낮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은 소득 백분위와 함께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4인 가구의 비중은 반대로 매우 빠르게 단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인 이상 가구의 비중도 소득 백분위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가구원이 다수인 가구의 비중이 가구주 소득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은 대체로 가구주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양상, 즉 출산에 대한 결정(fertility decision)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가구주 소득 백분



[그림 2] 가구주 소득 백분위별 가구원 수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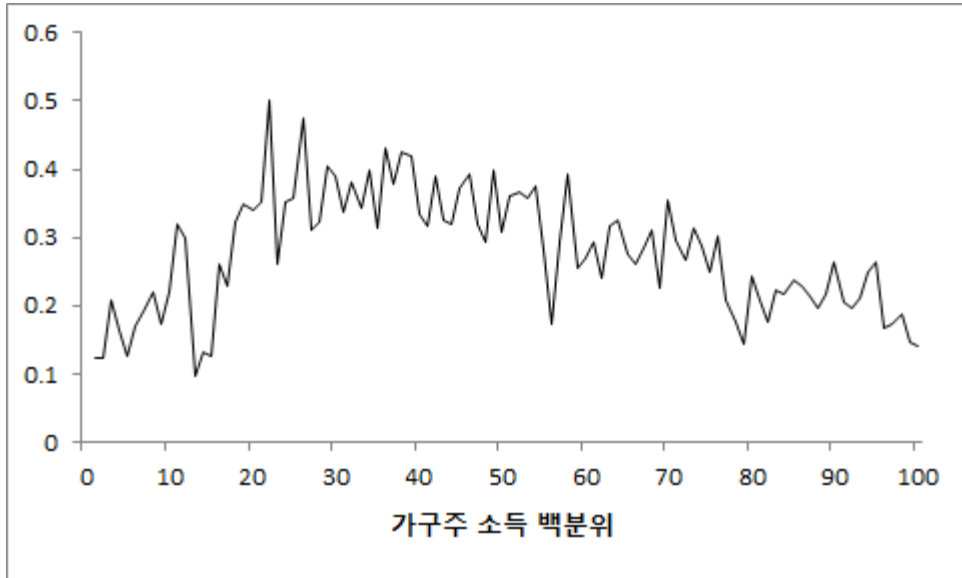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위의 하위 10%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 중위 10%에서는 3.0명, 상위 10%에서는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4)</sup>

한편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수(added workers)는 가구주의 소득 백분위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던 가구원 수와 달리 역-U자형을 보인다. 이는 [그림 3]에서와 같이 가구원 추가 취업비율이 역-U자형임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추가 취업비율은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들 가운데 취업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벌고 있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가구에서 가구주 이외 가구원들의 취업비율이 동일하다면, 추가 취업자 수도 평균 가구원 수와 마찬가지로 가구주 소득 백분위와 함께 단조 증가

14) 이는 출산 결정이 소득 불평등도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과는 차이를 갖는 결과이다. de la Croix and Doepke(2003)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자녀의 질(quality)보다는 수(quantity)에 투자할 것이라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하였고, Kremer and Chen(2002)는 저소득 가구의 높은 출산율이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의 소득 불평등도 문제를 심화시킴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결과는 이와 차이를 갖는데, 우리나라 가구에서 가구원 수 차이가 대부분 출산율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제3장의 <표 1> 참조), 위의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들에서 자녀의 수(the number of children)에 대해 정(正)의 소득효과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가구주 소득 백분위별 추가 가구원 취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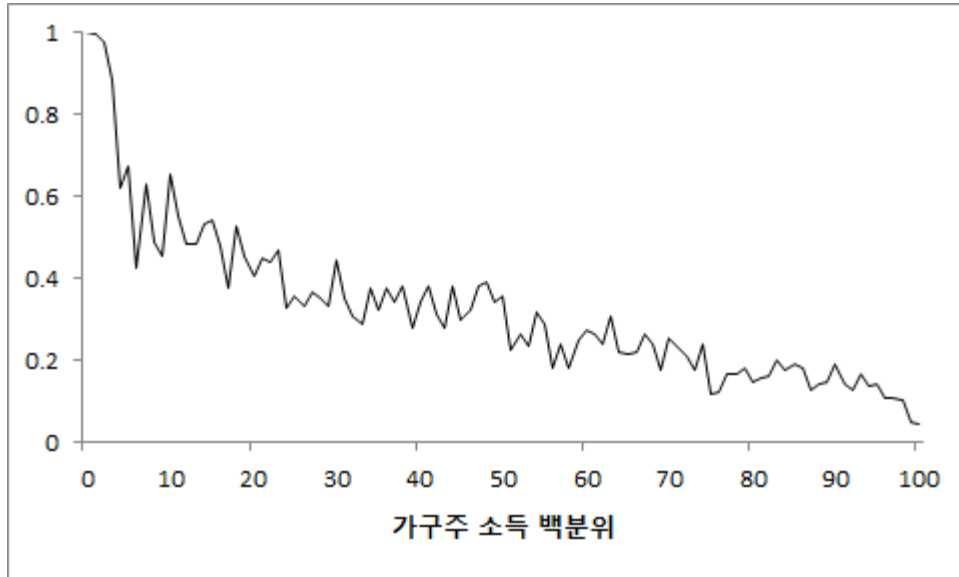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가 취업비율 및 그 수가 역-U자형을 갖는 것은 가구원들의 추가 노동공급에 소득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추가로 취업한 가구원들의 취업소득도 가구주 소득 분위별로 추가 취업자 수와 유사하게 역-U자형을 보인다. 가구주 소득이 0인 가구의 경우 추가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평균 22만 7천 원으로 추정되며, 가구주 소득이 0이 아닌 가구들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10%에서는 26만 2천 원, 중위 10%에서는 100만 원, 상위 10%에서는 80만 5천 원 수준을 보인다.<sup>15)</sup> 가구주 소득과 여타 가구원의 추가 취업을 통한 소득의 합,

15) 추가 취업자 수는 기준 소득 상위 분위에서 빠르게 감소하지만, 추가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다. 이는 가구의 기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추가 취업자의 소득이 높음을 반영하는데, 이는 가구구성에서 구성원 간 소득력(earnings power)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 간 소득력은 유전 및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연결될 수 있으며, 부부의 소득력은 결혼시장에서의 선택에 의존한다. Becker(1973; 1974; 1981)는 가구 내 전문화(specilaization within households)로 인해 부부의 임금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증 근거는 노동공급의 내생성 등의 문제로 인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종 간에도 다른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Smith, 1979). Lam(1988)은 가구 내 전문화하는 달리 가구 내 공공재 생산이 중요할수록 부부의 소득력에 정(+)의 상관관계가 유발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 4) 가구주 소득 백분위별 가구 취업소득 내 추가 취업소득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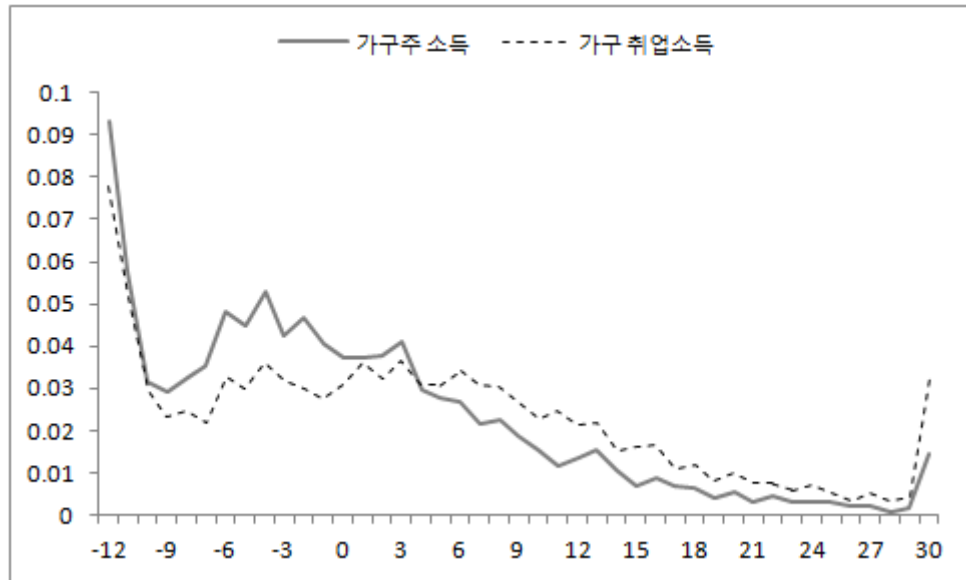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즉, 구성원의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자산소득의 합을 가구 취업소득이라고 할 때, 가구 취업소득에서 가구원의 추가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4]에서와 같이 가구주 소득의 백분위에 따라 단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구원의 추가 취업과 그로 인한 소득은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재화 및 노동수요 등의 변화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사업 소득의 불평등화 효과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에 그대로 반영되겠지만, 각 가구에서 가구원들의 추가 노동공급(취업)을 통해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을 상당히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 소득에 추가 취업자의 소득이 추가되면서 가구 취업소득의 불평등도가 변화하는 효과는 [그림 5]의 밀도함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그림 1]에서의 방식을 가구주 소득에 적용하여 소득 구간을 정한 뒤, 각 구간에 가구주 소득이 속한 가구의 빈도와 가구 취업소득이 속한 가구의 빈도, 즉, 각 소득변수의 밀도함수를 비교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두드러지는 효과는 가구원의 추가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0인 가구(소득 구간 -12 인 가구)의 비중이 약 1.5%p 하락하는 것과 중하위권의 비중

[그림 5] 가구주 소득과 가구 취업소득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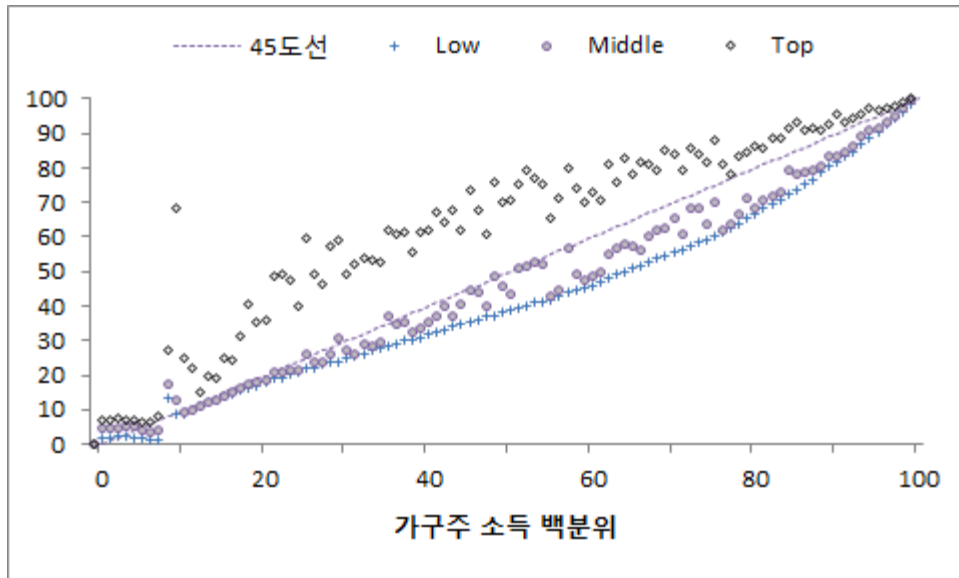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

이 줄고 중상위 이상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들 수 있다. 후자의 효과에서는 추가 가구원 소득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효과, 즉 지니계수가 가구주 소득에서는 .465이었던 것이 가구 취업소득에서는 .442로 하락하는 효과도 반영하고 있다.

여타 가구원의 추가 소득이 전체적인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가구들의 소득 순위(rank)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가구 간 소득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가구들의 소득 순위의 변화, 즉 소득 이동성 효과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각 가구가 가구주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분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가구 취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분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소득 이동성(mobil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림 6]에서는 각 가구별로 가구주 소득 기준 백분위와 가구 취업소득 기준 백분위를 구한 뒤, 가구주 소득의 각 분위에 속한 가구들 가운데, 가구 취업소득 기준으로 분위가 가장 높은 1/3, 중간 1/3 및 하위 1/3 가구들의 가구 취업소득 백분위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 45도 선은 가구주 소득의

[그림 6] 추가 가구원 소득을 통한 소득 이동성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백분위와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위쪽에 위치한 점은 가구주 소득의 백분위에 비해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가 상승, 아래쪽에 위치한 점은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 가구주 소득의 백분위와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를 비교할 때 가구주 소득의 백분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중하위권)들에서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 상승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가구주 소득 백분위가 80 이상에서는 2/3가 가구 취업소득 백분위가 더 낮아지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sup>16)</sup> 소득 백분위의 변화로 본다면 추가 가구원 소득으로 인해 소득 백분위가 2~30분위가 높아지는 가구도 가구주 소득 백분위 60 이하에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서 추가 가구원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 이동성과, 이에 따른 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구주 소득 백분위별로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 평균을 구하면, 가구주 소득 백분위 60 이하에서는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가 평균적으로 상

16) 가구주 소득이 낮은 백분위에서 특이한 모양을 보이는 이유는 전체에서 9.3%를 차지하는 가구주 소득이 0인 가구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하였고 그 이상에서는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어 불평등도 완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 2. 1인당 소득지표: 가구원 수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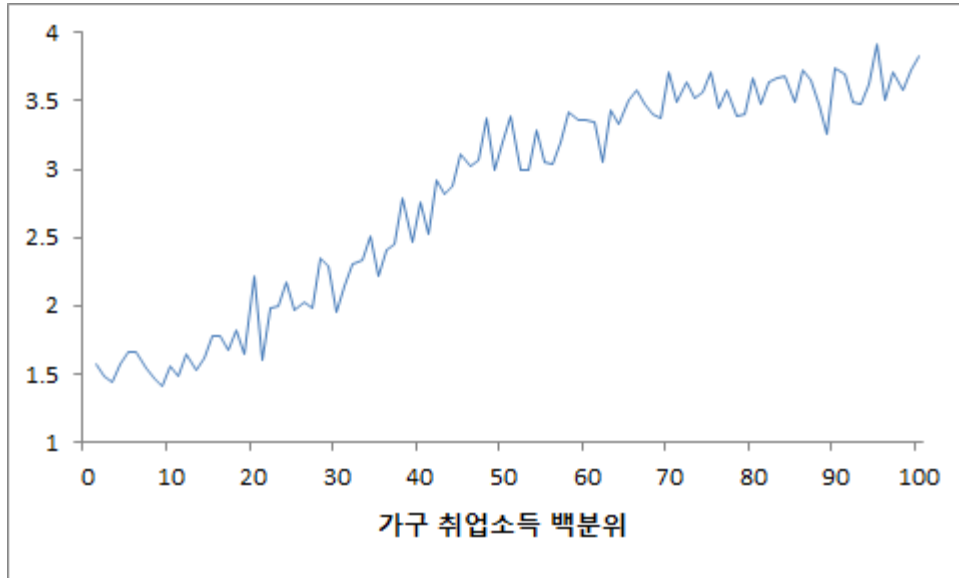
가구주 이외에 가구원들이 추가로 취업할수록 가구 취업소득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구원 수와 가구 취업소득은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를 갖지만, 가구원이 많을수록 가구원 1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낮을 수 있다. 소득 불평등도 지표가 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 사이의 효용 불평등도란 측면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구원 수 역시 소득 불평등도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정의된 가구 취업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취업소득을 정의하고, 이때 가구원 수로 나눈다는 것이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sup>17)</sup>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소득은 가구소득에 비해 더 평등할 수도 있고 불평등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간의 함수관계에 의존한다. [그림 7]에서는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별로 평균 가구원 수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 가구원수는 가구취업소득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는 가구주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았던 양상(그림 2)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추가로 취업할 수 있는 가구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구취업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도 많음에 따라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는 가구취업소득의 불평등도에 비해 심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데, 1인당 취업소득의 지니계수는 .369로 가구취업소득의 .442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 취업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취업소득을 정의함에 따라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에 있어서, 역시 소득격차의 감소와 소득 이동성의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앞서 [그림 6]에서와 같이 가구별로 가구 취업소득의 백분위와 1인당 취업소득 백분위를 구하여 그 이동성을 상·중·하로 나누어 본 결과이다. 그림

17)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불평등도 지표(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을 균등화 지수인 가구원 수의 근, 즉,  $\sqrt{N}$ 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원 수 효과뿐 아니라 공동소비(collective consumption)를 감안한 지표이다. 여기서는 일단 가구원 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을 가구원 수( $N$ )로 나눈 1인당 소득지표를 먼저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7] 가구 취업소득 백분위별 평균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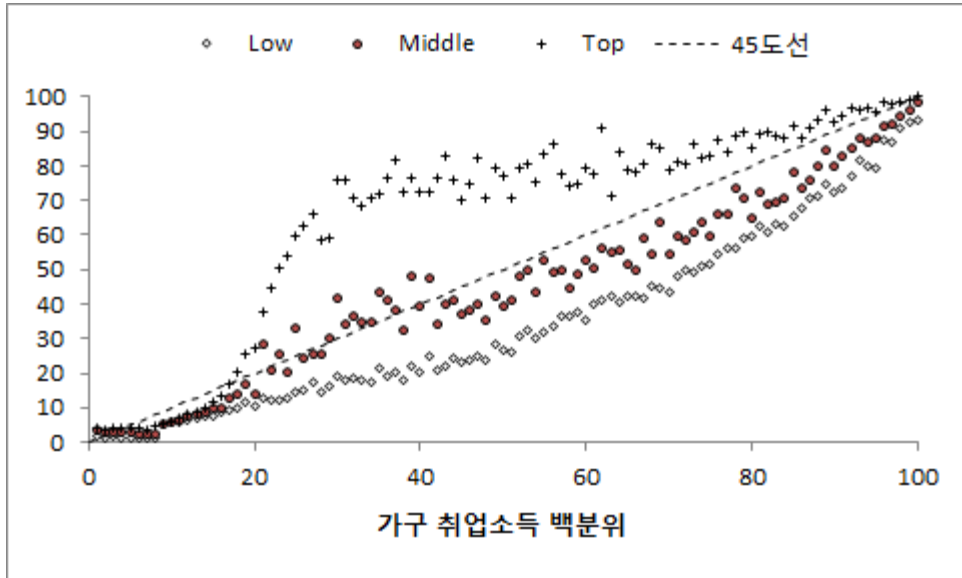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에 의하면 가구원 수가 많아서 1인당 취업소득의 백분위가 하락하는 가구들도 상당하고, 가구 취업소득은 높지 않았으나 가구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1인당 취업소득 백분위는 크게 상승하는 가구들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 취업소득 중하위권에서 1인당 취업소득 백분위가 많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가구원 수는 많지 않지만 추가 소득원이 있는 가구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가구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로 나눈에 따른 효과, 즉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가구 취업소득은 높지만, 1인당으로 보면 취업소득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효과는, 가구 간의 소득격차의 축소뿐 아니라 가구원 수로 나눈에 따른 소득 이동성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공동소비를 감안한 균등화된 1인당 소득지표

가구원 수를 감안하여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균등화된 1인당 소득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득을 가구원 수( $N$ )로 나누어 정

〔그림 8〕 가구원 수로 나눈에 따른 소득 백분위 이동성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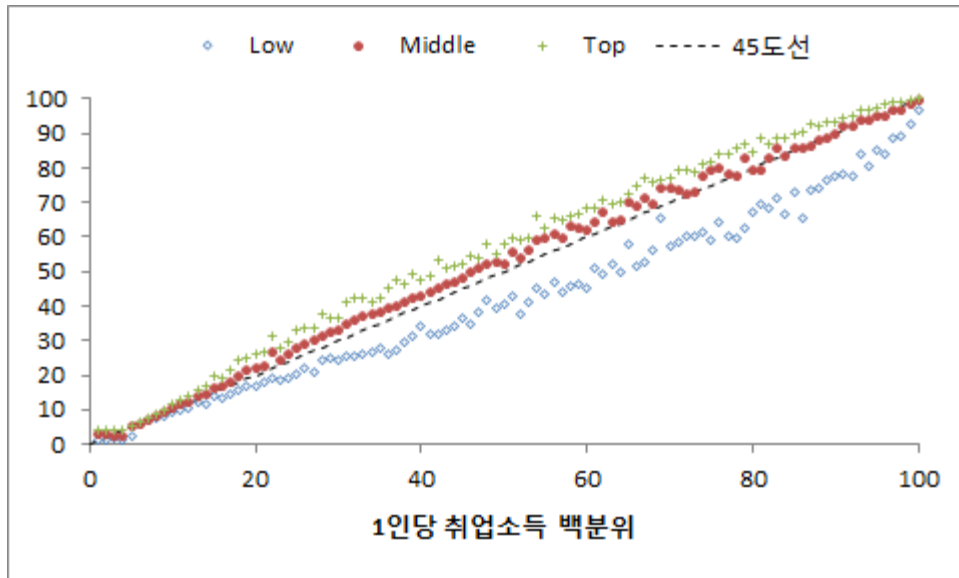
의한 위의 1인당 취업소득과 달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 $\sqrt{N}$ )으로 나누어 정의한 개념이다. 이렇게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는 근거로는 가구 지출에서 가구원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내구재의 비중이 상당하므로 실제 개별 구성원의 후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sup>18)</sup> 예를 들어 가구원 수가  $N$ 인 가구에서 개인의 효용함수( $U$ )가 공동소비재  $X$ 와 개인별 소비재  $C$ 에 대해  $U = X^\alpha C^{1-\alpha}$ 의 Cobb-Douglas 형태를 가지며, 이 가구의 소득을  $I$  라고 할 때 예산식이  $X + NC = I$  인 경우라면, 최적화된 간접효용함수는  $AI/N^{1-\alpha}$ 의 형태를 지니게 되고,  $\alpha = .5$ 인 경우에는 균등화된 1인당 소득지표는 개인의 효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sup>19)</sup> 본 절에서는 앞서 본 1인당 취업소득에 가구취업소득을 가구원수의

18) 가구소비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논의로는 Lazear and Michael(1980), Muellbauer(1977), Pollack and Wales(198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9) 물론 식료품비 비중은 소득에 따라 감소하는 등 효용함수가 Cobb-Douglas 형태라고 단정할 근거는 취약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소비재의 비중이 높을 때 개인이 향유하는 소비는 전체 가구소득의  $1/N$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등화 지수가 사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우철·민희철·박상원(2006)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림 9] 공동소비에 따른 소득 백분위 이동성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제곱근( $\sqrt{N}$ )으로 나눈 균등화된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하여 공동소비가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구원 수 대신 균등화 지수인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1인당 취업소득을 정의함에 따른 효과, 즉 공동 소비를 감안함에 따른 소득 불평등도 변화 효과는 실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앞의 [그림 6]과 [그림 8]에서와 같이 공동소비에 따른 소득 이동성을 평가한 결과인데, 가구 취업소득을 가구원 수( $N$ )으로 나눈 1인당 취업소득의 백분위를 수평축으로 하여, 균등화된 1인당 취업소득의 백분위를 비교한 결과, 소득 백분위 이동성은 상당히 일률적이며 그 폭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가구 취업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정의한 균등화된 1인당 취업소득의 경우 지니계수는 .357로서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취업소득의 지니계수 .369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소비에 의한 소득 이동성도 크지 않고, 이에 따른 불평등도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가구구성의 양상 및 소득에의 효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장에서의 개인별 성과 불평등이 큰 가감 없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구주 소득의 경우 지니계수가 .465 수준이지만, 추가 가구원의 취업소득까지 감안한 가구 취업소득의 지니계수는 .442로 하락하고, 이에 가구원 수를 감안한 1인당 취업소득의 지니계수는 .369로 크게 하락함을 알 수 있다. 공동소비를 감안할 때 지니계수는 추가로 .357로 하락하지만, 그 하락 폭은 크지 않다. 이는 시장에서의 불평등 압력에 대응하여 가구원들이 추가로 취업하고, 가구구성을 통해 전체 구성원의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지니계수의 하락 폭 자체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구원 수를 감안할 때의 지니계수 하락 폭이 가장 크다는 점은 첫째, 가구주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등을 통해) 가구원 수가 많은 효과, 둘째, 가구주 소득이 낮아도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에서 추가 취업을 통해 가구 취업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전체 구성원 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를 감안할 때의 효과가 큼에 따라 본 장에서는 가구원 수, 즉 가구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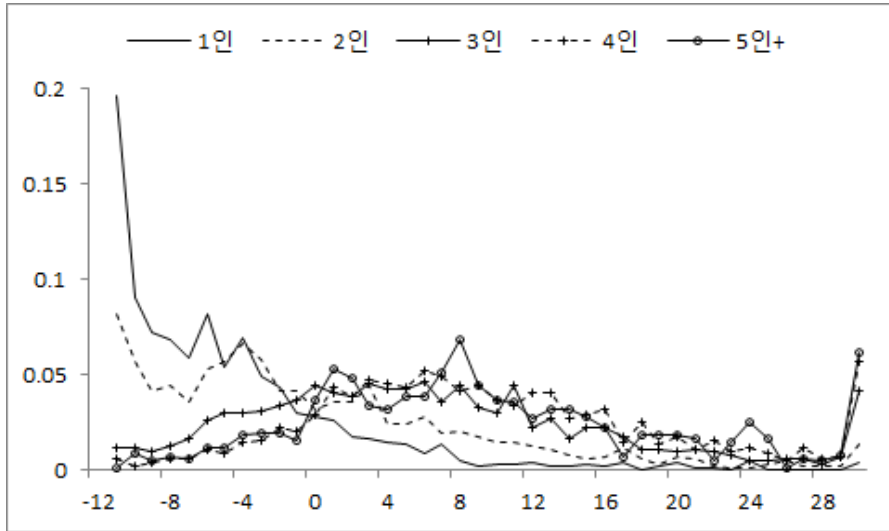
#### 1. 가구원수별 소득분포의 비교

우선 가구 취업소득의 분포를 가구규모(가구원수)별로 비교하면 그 분포의 모양과 위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그림 10-1]에서 가구 취업소득의 경우 3~5인 이상 가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에서 유사하게 역 U-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1인과 2인 가구에서는 낮은 소득수준에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평균 가구 취업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이며, 가구소득이 0이 아닌 가구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 1~5인 이상 가구별로 각각 1,333천 원, 2,349천 원, 3,802천 원, 4,438천 원, 4,468천 원으로 추정된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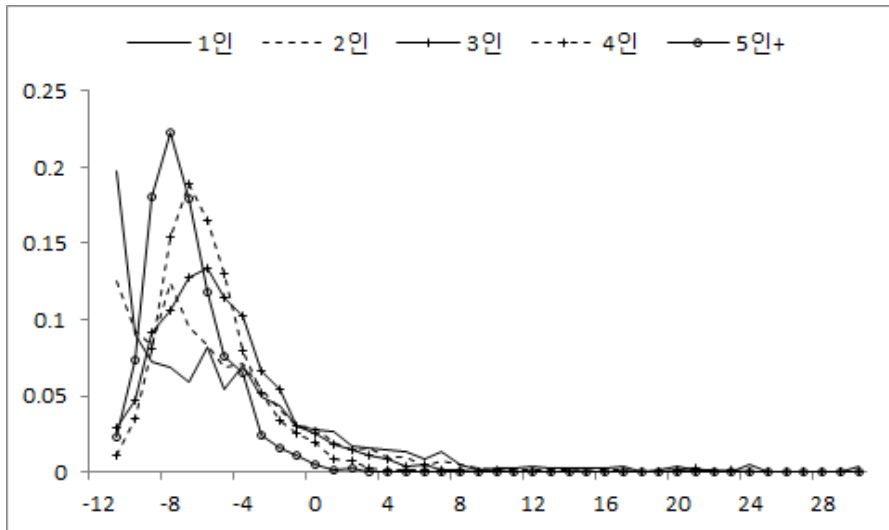
20) 여기서는 총 시장소득과 이에 가구원 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1인당 소득의 분포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총 시장소득이 0으로 보고된 가구들은 제외하였다.

[그림 10] 가구원수별 취업소득의 분포(2012년)

1) 가구 취업소득의 분포



2) 1인당 취업소득의 분포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21) 가구 취업소득이 0인 가구들도 포함할 경우, 가구 취업소득의 평균은 가구원 수별로 각각 1,021천 원, 2,134천 원, 3,677천 원, 4,402천 원, 4,441천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림 10-2]에서는 가구 취업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취업소득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가구 취업소득의 분포와 유사하게 1~2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양상에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값의 격차는 크게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1인당 취업소득은 가구 취업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이므로 3인 이상 가구들의 경우 가구 취업소득에서보다 훨씬 낮은 소득수준에서 분포의 최빈값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경향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강하다. 가구 취업소득이 0이 아닌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1인당 취업소득의 평균을 구한 결과 1~5인 이상 가구규모별로 1,333천 원, 1,174천 원, 1,267천 원, 1,109천 원, 864천 원으로 격차가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가구 취업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취업소득의 평균은 가구 취업소득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격차가 훨씬 작고, 그 결과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가구 취업소득보다 작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가구 취업소득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만일 가구 취업소득이 가구원 수와 독립적인 분포를 갖는다면, 즉 예를 들어 모든 가구에서 취업자는 1명(가구주)이며, 가구주의 소득분포가 가구원 수와 독립적이라면 앞서 [그림 10-1]에서 가구원수별 가구 취업소득의 분포는 모두 동일할 것이고, [그림 10-2]에서 1인당 취업소득의 분포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더 낮은 쪽에 위치하였을 것이다.<sup>23)</sup> 이러한 경우라면 가구 취업소득의 분포에 비해 가구원 수( $N$ )로 나눈 1인당 시장소득의 분포가 더 불평등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유발되는 소득 불평등도 압력이 가구구성에 의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매우 당연하게 보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취업소득이 증가하는 함수관계가 상당히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가구 취업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이 반드시 내생적인 가구구성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경제 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적으로는 개개인의 취업확률도 동일하고, 취업할 때의 소득이 갖는 확률분포 역시 개인별로 서로 독립적이고 동일한 경우를 상정하자. 이 경제는 사

22) 가구 취업소득이 0인 가구들을 포함할 경우 2~5인 이상 가구에서 각각 1,067천 원, 1,226천 원, 1,101천 원, 859천 원으로 추정된다.

23) 극단적으로 가구주의 소득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가구 취업소득은 완벽하게 평등하지만, 1인당 취업소득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작아지므로 불평등도가 유발된다.

전적으로 개인 소득의 불평등도가 없는 경제다. 이때 가구구성에 전혀 내생성이 없이 구성원들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임의의 규모를 갖는 가구들을 구성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가구원 수가  $N$ 인 가구들의 가구 취업소득의 기댓값은 가구원 수가 1인 가구의  $N$ 배가 될 것이므로 가구 취업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한편 가구취업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취업소득의 기댓값은 모든 규모의 가구에서 동일하겠지만, 그 표준편차는 가구원수가  $N$ 인 가구들에서는 가구원수가 1인 가구의  $1/N$ 이 되므로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는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구구성이 완전히 임의적이고, 개인 소득의 불평등도가 사전적으로는 0인 경우에도 가구원수가 큰 가구가 많아질수록 사후적인 불평등도가 완화된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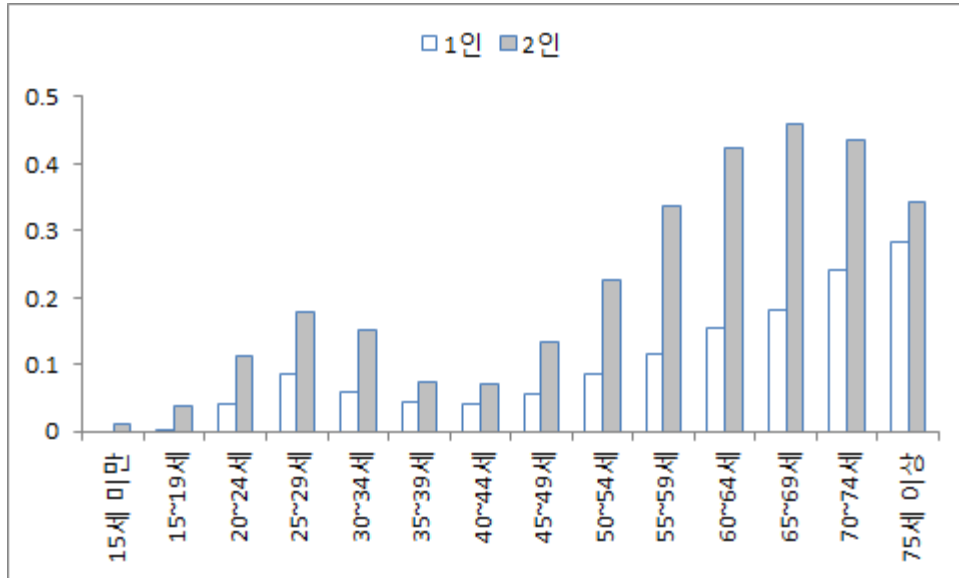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내에 구성원들을 임의로 묶어 가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개인 후생의 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가구취업소득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가구가 임의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의 [그림 10]에서 가구원수별로 가구취업소득과 1인당 취업소득의 분포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1~2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가구구성이 임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취업소득과 1인당 취업소득의 밀도함수가 모두 유사한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3인 이상 가구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 밀도함수의 모양이 소득수준에 따라 단조 감소하는, 즉 저소득층에 빈도가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만일 가구구성이 앞의 예에서처럼 완전히 임의적이었다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당 취업소득의 분포가 유사한 형태를 보여야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림 10]의 결과는 가구구성과 소득 불평등도 완화 효과의 분석에 있어서 2인 이하 가구와 3인 이상의 가구의 차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2. 생애주기에 따른 구성원 신분과 소득

개인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며,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자녀들을 분가시키는 생애주기는 그 개인 어떤 형태 및 어떤 규모(가구원수)의 가구에 속하는지

24) 일례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가구에 포함되면,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는 사라지게 된다.

[그림 11] 연령별 2인 이하 가구에 속한 비중(2006~12년 평균)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림 11]에서는 연령별로 2인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비중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선 20세 이하의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즉 본인이 가구주인 비중은 거의 0에 가깝고, 1인 가구에 속하는 비중은 25~29세에 다소 높았다가 40대 중반까지 감소하고, 이후 연령에 따라 단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대체로 부모와 살다가 일부 취업과 함께 분가하고, 이후 결혼 및 출산, 육아 등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살다가 자녀들이 분가하고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2인 가구에 속하는 비중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70세 이후 2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사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생애주기 효과는 <표 1>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표에서는 가구원수(규모)별로 가구구성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주를 제외한 구성원들의 평균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 모든 개인이 가구주이므로 이는 제외하고 2인 가구부터 비교하고 있다. 2인 가구에서 배우자 평균이 .692라는 것은 전형적인 2인 가구에서는 가구주 1인과 .692명의 배우자가 동거함을 의미하는데, 2인 가구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표 1〉 가구규모별 구성원의 평균빈도(가구주=1)1)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 규모			
	2인	3인	4인	5인 이상
배우자	.692	.789	.949	.960
미혼 자녀	.193	1.031	1.896	2.428
기혼 자녀 및 배우자	.002	.018	.015	.156
손자녀, 증손자녀 및 배우자	.012	.033	.036	.164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076	.091	.080	.369
조부모	.001	.001	.001	.003
가구주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018	.027	.015	.052
기타	.006	.010	.008	.043
전 체	1.000	2.000	3.000	4.1502)

주 : 1) 1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

2)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9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열의 합이 4보다 큼..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가구원이 1명이므로 이를 기초로 2인 가구의 경우 69.2%가 부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3%가 가구주와 1명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이고, 7.6%가 부모 가운데 1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임도 알 수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은 2명이므로, 그 가운데 .789인이 배우자, 1.031인이 미혼 자녀이다. 나머지 구성원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로서 가구당 .091에 해당하는데, 이는 3인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최대 4.55%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3인 가구의 경우는 대체로 배우자와 미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4인 또는 5인 이상 가구에서는 95% 이상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미혼 자녀는 각각 1.9명과 2.4명으로 추정된다. 즉, 4인 가구에서는 가구주, 배우자,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96.1%(=1+.949+1.896/4)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의 빈도는 가구당 .080

명에 불과하다. 5인 이상 가구에서는 미혼 자녀가 3명인 경우는 절반 수준으로서 가구주, 배우자, 미혼 자녀가 가구원의 84.4%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25)</sup> 나머지 구성원 가운데에서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빈도가 .369로 상당히 높고, 기혼 자녀 및 배우자, 손자녀의 빈도가 그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3~4인 가구의 경우 대체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빈도가 높고, 부모를 모시는 경우, 또는 기혼 자녀와 동거, 또는 3대가 동거하는 경우는 5인 이상 가구에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앞의 [그림 11]에 의하면 1~2인 가구에 속하는 비중이 고연령층에서 높는데, 이 양상을 <표 1>의 결과와 종합하여 볼 때 고연령층이 기혼 자녀와 동거하기보다는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5인 이상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지만, 전체 가구 가운데 5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7.6%에 불과, 인구 기준으로는 13.9%에 불과하여 고연령층의 대부분이 기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연령층의 독립가구 형성은 연령대별로 가구구성원 신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표 2>에서도 확인된다. 이 표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구성원 신분(가구주와의 관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24세 이하에서는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신분(major status)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결혼 적령기인 25~34세에서는 가구주, 배우자 및 미혼 자녀로서의 신분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연령대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신분으로 정의한 주요 신분은 표에서 음영으로 처리하였는데, 35세 이상에서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주요 신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가운데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로 동거하고 있는 비중은 60~64세 연령층에서 9.3%, 65세 이상에서도 19.3%에 불과하여 대체로 독립된 가구에 속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기혼 자녀로 가구주와 동거하고 있는 비중도 최대 3%를 넘지 않아 고연령층 부모가 가구주의 신분을 유지하고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도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고연령층 가운데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대부분 1~2인 가구를 형성하여 가구주 또는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25) 미혼 자녀의 수가 2.4이므로 미혼 자녀가 3인인 가구의 비중이 대체로 절반 수준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2> 연령대별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2012년)

	가구주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기타
			미혼	기혼					
<15세			.955		.041			.000	.004
15-19	.004	.000	.959		.024			.006	.006
20-24	.032	.022	.898	.008	.016			.017	.007
25-29	.162	.144	.618	.027	.008			.037	.003
30-34	.355	.413	.187	.021	.003			.018	.004
35-39	.503	.409	.051	.021	.000			.014	.002
40-44	.529	.424	.025	.015		.001		.006	.001
45-49	.596	.385	.008	.004		.002		.005	.001
50-54	.610	.365	.002	.007		.011		.001	.004
55-59	.591	.363	.000	.001		.039		.001	.005
60-64	.571	.335				.093			.001
65+	.581	.220				.193	.003		.002

주 : 1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한 개인의 실제 신분이 자신 연령대의 주요 신분과 일치하는지는 그 개인의 소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에서는 앞서 정의하였던 1인당 취업 소득을 연령대별 신분별로 평균을 구한 결과인데, 2012년 자료에서 주요 신분에 속한 표본의 평균 1인당 취업소득은 1,099천 원으로 주요 신분이 아닌 표본의 875천 원보다 25.6%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60세 이상에서만 예외적인 양상을 보인다.<sup>26)</sup> 60세 이상에서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로 동거하는 경우, 1인당 취업소득의 평균값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 신분인 경우의 소득을

26) 가구주의 형제, 자매인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가 일부 있으나, 이 신분의 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중요한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자녀와 동거할 경우 1인당 평균 시장소득이 927천 원에 이르지만, 가구주(또는 배우자) 신분인 경우 435천 원에 불과하여 전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다. 즉, 각 연령대 내에서 대표적 형태의 가구에 속하여 주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인구들은 비교적 높은 1인당 취업소득을 향유하고 있는데, 고연령층의 경우에서만 대표적인 가구형태인 1~2인 가구에서 가구주(또는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는 계층이,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계층보다 1인당 취업소득이 훨씬 낮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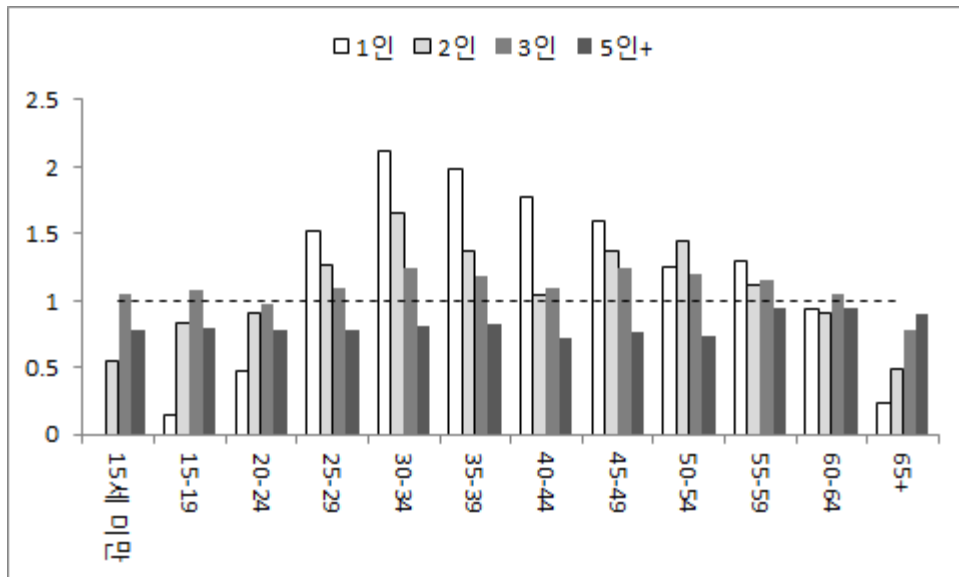
〈표 3〉 연령대 및 신분별 1인당 취업소득(2012년, 단위 : 천 원)

	가구주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기타
			미혼	기혼					
<15세			100.4		60.4			38.8	69.8
15-19	16.4	11.3	111.2		31.5			62.3	107.3
20-24	56.9	99.3	118.7	63.8	43.6			74.4	105.5
25-29	141.0	122.6	134.8	92.8	77.9			129.3	36.9
30-34	129.3	114.6	123.8	96.7	25.5			130.0	189.2
35-39	115.9	115.6	107.2	93.4	5.9			124.3	77.6
40-44	118.3	123.5	78.7	71.6		52.7		110.5	69.0
45-49	126.9	143.7	93.6	63.5		89.3		88.2	69.8
50-54	139.3	143.5	13.4	68.4		91.5		61.2	76.8
55-59	141.8	122.7		7.6		96.3		127.0	148.3
60-64	97.8	92.9				97.8			43.0
65+	42.4	46.3				92.7	101.8		78.3

주 : 1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이와 같이 볼 때 대표성을 갖는 가구에 속한 개인들이, 그렇지 못한 개인들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가 가장 대표성 있는, 또는 가장 흔한 가구형태로 판단되며,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추가로 모시는 5인 이상 가구도 흔한 가구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에서는 이와 같이 대표성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에 속한 개인들 간에 소득의 격차가 연령대별로 상당함을 보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각 연령층에서 1인, 2인, 3인 및 5인 이상 가구에 속한 개인들의 1인당 취업소득 평균을 4인 가구의 1인당 취업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3인 가구에 속한 개인들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4인 가구에 속한 개인들에 비해 매우 유사한 소득 수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인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대체로 55세 미만에서는 .72~.82 수준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9를 웃돌고 있다. 이는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고연령층의 소득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 3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 가구에 비해 특별히 1인당 취업소득상의 불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2] 4인 가구 대비 연령별·가구원수별 평균 1인당 취업소득 비율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그러나 1~2인 가구에서는 연령대별로 4인 가구에 비해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1인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기인 25세 이후에는 4인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1인당 취업소득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일 경우 본인의 소득은 낮지 않으나 가구원수는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구취업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는 1인당 취업소득이 오히려 다른 가구에 비해 더 크다는 점, 청년층 중에도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24세 이하, 65세 이상의 1인 가구는 4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취업소득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취약한 연령계층임에도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다른 구성원과 동거하지 못함에 따라 가구 전체의 취업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부양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원과 동거하지 못함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한편 2인 가구의 경우 25세 이상에서는 4인 가구에 비해 크게 불이익이 없거나 1인 가구에서와 같이 1인당 취업소득이 오히려 더 높은 양상을 보이지만, 65세 이상에서는 4인 가구에 속한 65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연령층에서는 1~2인 가구에 속한 것이 1인당 취업소득 상의 불이익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3. 사적·공적이전지출의 역할

취업소득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경제활동이 취약한 계층이 1~2인의 소규모 가구에 속할 때 이들의 1인당 취업소득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최종적인 소득, 또는 소비가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혼 자녀가 분가하더라도 기혼 자녀가 부모를 충분히 부양한다면, 즉 가구 간 이전지출이 충분하다면 노부부에게 비동거로 인한 취업소득의 불이익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즉, 비록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족 내에서는 이전지출 및 수입을 통해 소득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다면, 취업소득은 가구구성에 민감하게 의존하더라도 그 불평등도가 해당 개인들의 효용 불평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적이전지출 및 수입의 양상을 비교

27) 실제 가구주 또는 배우자 신분인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소득이 0인 인구의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다.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3-1]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사적인 이전소득과 이전지출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있는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에서 이전소득은 평균 220천 원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전지출이 123천 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 가구에서의 순 이전수입(net private transfer income)은 97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표 3>에서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인구와 독립 가구를 구성한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취업소득 격차는 450천~500천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97천 원의 순 사적이전수입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구주가 24세 이하인 저연령층 가구에서는 사적이전수입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러한 가구의 대부분이 학생 신분으로서 부모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28)</sup> 다만 가구주가 24세 이하인 저연령층 가구는 전체 가구의 0.4%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층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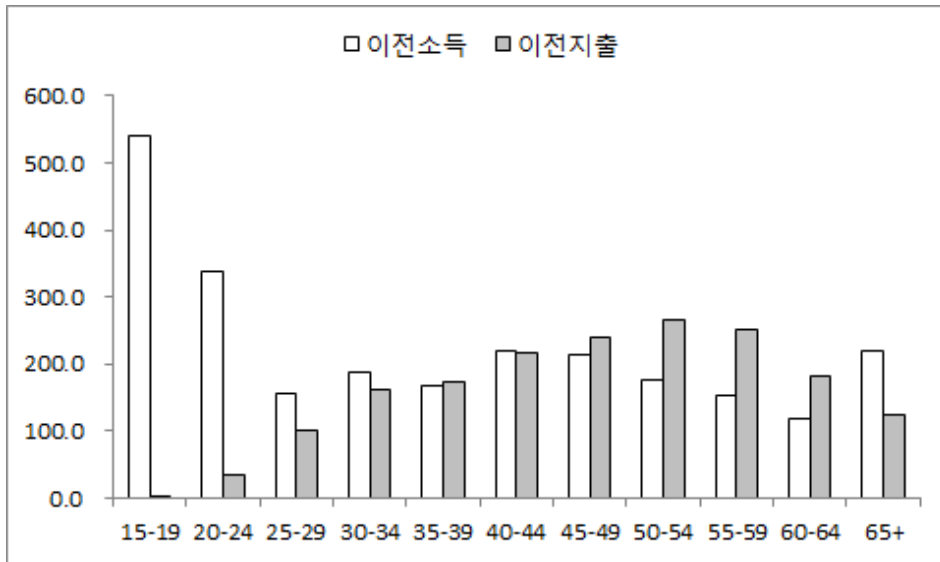
[그림 13-2]에서는 가구 간 이전소득 및 지출을 감안할 때 1~2인 가구에 속함에 따른 1인당 소득상의 불이익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의 가구취업소득에 사적이전수입을 더하고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값을 가구세전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세전소득으로 정의하였다.<sup>29)</sup> [그림 13-2]에서는 앞서 [그림 12]에서와 같이 각 연령층에서 1인, 2인, 3인 및 5인 이상 가구에 속한 개인들의 1인당 세전소득 평균을 4인 가구의 1인당 세전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1~2인 가구에 속함에 따른 불이익이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되는 양상이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변화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본 분석에 사용된 2012년 자료의 경우 1인 가구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15~19인인 경우 본인이 재학생인 경우가 100%이며, 20~24세인 경우에도 재학생 및 휴학생의 비중이 28.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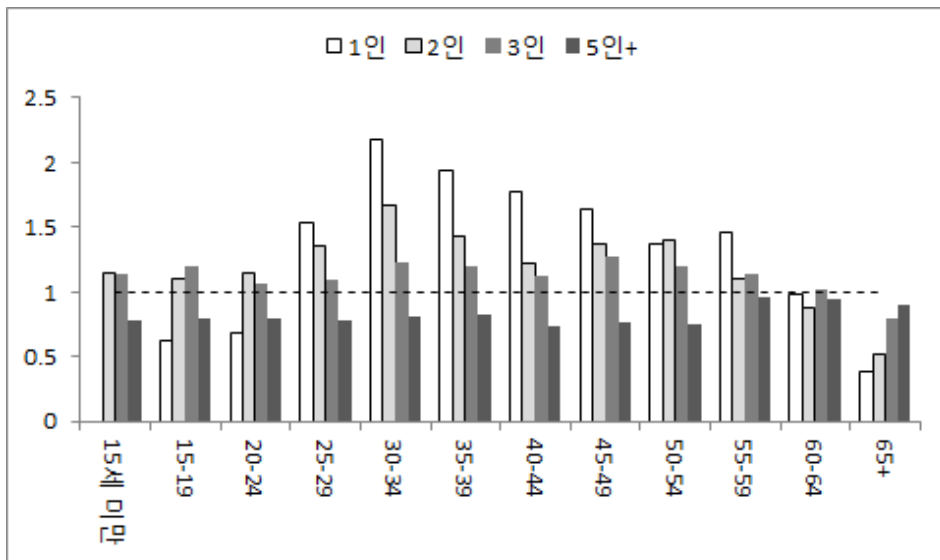
29) 통계청의 시장소득 개념은 본 논문의 가구취업소득에 사적이전수입을 더한 값으로 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는 이유는 가족 내에서의 소득 공유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자료의 경우 가구당 사적이전소득과 지출의 평균은 190.2천 원과 196.5천 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누군가의 이전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이전지출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즉, 예를 들어 취업소득이 600만 원인 4인 가구 기혼 자녀 부부가 그 부모(2인 가구)에게 200만 원의 이전지출을 한다면 1인당 세전소득은 모든 가구에서 100만 원인데, 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으면 4인 가구의 세전소득이 과대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림 13] 가구 간 사적이전소득/지출의 효과(2012년)

1) 가구주 연령대별 사적이전소득 및 지출(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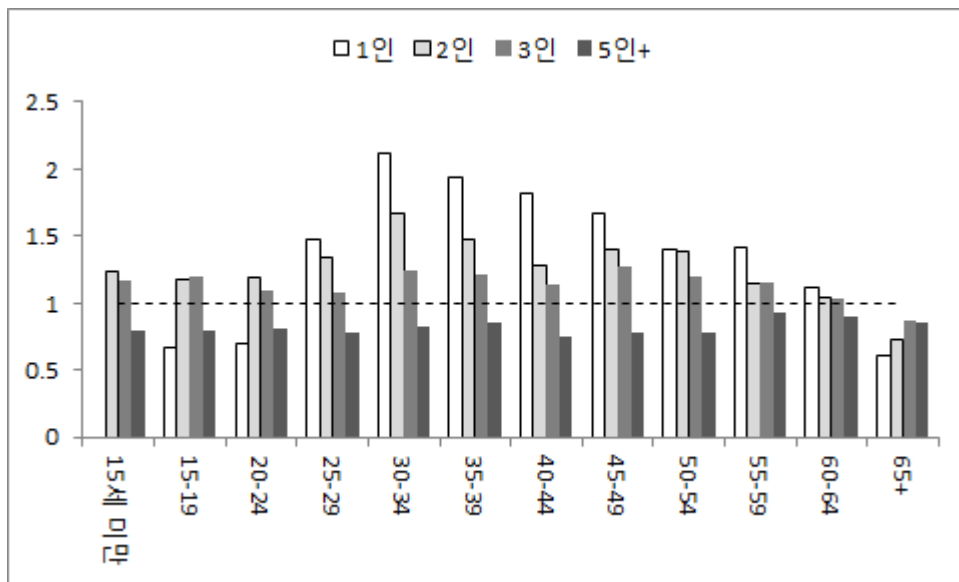
2) 4인 가구 대비 연령별·가구원수별 평균 1인당 세전소득 비율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전체 가구에서 24세 이하 연령층 가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에 대한 사적이전지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는 실제 사적이전지출을 통해 경제활동이 취약한 계층에게 소득이 효과적으로 공유되는 양상이 예상 외로 빈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재분배 정책의 성격을 지닌 공적이전지출이 얼마나 보완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정의된 가구 세전소득에서 경상조세, 사회보험료, 연금기여금 등의 공적지출 부담액을 공제하고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및 조세환급액 등 공적이전수입을 포함시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정의한 뒤, 이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가처분소득을 정의하였다.<sup>30)</sup> 이렇게 정의된 1인당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앞서 [그림 12] 및 [그림 13-2]에서와 같이 가구주 연령대별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각 규모별 평균 비율을 구하여 [그림 14]에 표시하였다.

[그림 14] 4인 가구 대비 연령별·가구원수별 평균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율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30) 여기서의 가처분소득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가처분소득에 비교해 사적이전지출을 공제하였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이 그림에 의하면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지출에 의한 효과는 65세 이상 연령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그림 12]에서 65세 이상 연령층 1인당 취업소득은 1~2인 가구에 속할 때 4인 가구에 비해 23.3%, 48.7%에 불과하였으나, 사적이전소득과 지출을 감안한 [그림 13-2]의 1인당 세전소득에서는 이 비율이 38.6%와 52.7%로 소폭 개선되었고, 정부의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을 모두 감안한 [그림 14]의 가처분소득에서는 그 비율이 61.7%, 73.0%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구 간 사적이전지출의 효과가 1~2인 가구에 속한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대비되어 정부의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65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 등의 결과는 평균 소득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소득의 분포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분포에 대한 함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다양한 사적·공적 분배개선책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4>에서는 1인당 취업소득의 지니계수에 비해, 가구 간 사적이전지출을 포함하였을 때의 지니계수, 연금 수령 및 기여액을 감안했을 때의 지니계수, 조세 및 사회보장, 사회수혜금을 감안했을 때의 지니계수, 연금과 조세, 사회수혜금 등을 모두 감안하였을 때의 지니계수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사적이전지출의 경우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2인 이하 가구에 속한 25세 이하 및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특히 25세 이하 연령층의 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연금(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은 전반적으로 사적이전지출보다 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작으며, 그 효과도 2인 이하 가구에 속한 65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앞의 [그림 13] 및 [그림 14]에서 보았던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주고 있다. 취업소득에 순 사회수혜금을 추가할 때 불평등도가 감소하는 효과는 그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 가구별 양상도 전체 가구, 2인 이하 가구 및 연령계층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사회수혜금 및 조세 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나 가구규모에 중립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측면, 즉 연금, 조세, 사회수혜금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취업소득의 불평등도가 감소하는 효과는 역시 2인 이하 가구에 속한 65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표 4>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사적이전지출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요인의 효과 비교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표 4〉 사적·공적 분배 개선책의 효과

1인당 소득 지표	전체	2인 이하 가구		
		전체	<25세	≥65세
취업소득	.369	.544	.501	.706
취업소득 + 순 사적이전소득1)	.344	.497	.386	.631
취업소득 + 순 연금수령액2)	.352	.487	.495	.571
취업소득 + 순 사회수혜금3)	.357	.527	.489	.683
취업소득 + 순 연금수령 + 순 사회수혜금	.340	.468	.482	.540

주 : 1) 순 사적이전소득 = 가구간 이전소득 - 가구간 이전지출

2) 순 연금수령액 = 연금수령액 - 연금기여액

3) 순 사회수혜금 = 사회수혜금 - (순조세부담 + 사회보장료)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불평등 압력이 가구구성을 통해 1차적으로 완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취업소득에 있어서도 아직 상당한 수준의 소득 불평등도가 존재하는데, 사적이전지출이 이 불평등을 완화키는 효과(지니계수 .025 감소)와 연금 및 조세 등 재분배 제도가 완화시키는 효과(지니계수 .029 감소)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물론 전자는 소규모 가구에 속한 25세 이하 연령층 불평등도 완화에 집중된 반면, 후자는 65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사적이전지출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부모 부양 효과에 대한 가상적(counter-factual) 추정

앞선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기혼 취업 자녀와 동거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을 공유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물론 그러한 연령층 가운데 자신들을 부양할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결과는 대체로 핵가족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핵가족화되어도, 즉 비록 동거는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가족 내 이전지출을 통해 비동거로 인한 불이익이 얼마든지 해소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본 논문에 사용된 전국가계조사에 의하면 이런 이전지출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적이전지출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적이전지출을 통해 충분히 불평등도가 해소될 수 있다면 그만큼 고연령층 소득지원을 위한 정부지출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경제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사적이전지출이 얼마나 불평등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만일 부모와의 동거가 일반화되어 소득을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면, 또는 보다 현실적으로,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동거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사적이전지출이 확대되었다면 전체 소득 불평등도는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 가상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을 해 봄으로써 사적이전지출을 활용하여 얼마나 소득 불평등도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ball-park figure)를 얻고자 한다.

사적이전지출의 효과에 대한 가상적 추정을 위해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1인 가구 또는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들이 기혼 자녀 가구와 동거하여 전체 가구소득을 공유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즉, 1~2인 고연령 가구를 기혼 자녀 가구에 결합시켜 두 가구의 가구취업소득을 모두 합한 뒤, 이를 결합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로 나눈 값을 1인당 취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이의 불평등도(지니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자료 내에서는 고연령층 가구의 자녀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보장도 없고, 포함되어 있어도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 고연령층 가구에 대해 그 가구의 기혼 자녀 가구와 가장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자료 내에서 찾아서 가상적으로 결합시킬 수밖에 없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sup>31)</sup>

우선 일반적으로 부모와 기혼 자녀 간에 연령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령격차는 부모가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sup>32)</sup> 그 결과 동거하는 아버지와 가구주의 평균 연령 차이는 31.0세(표준편차 5.0세), 동거하는 어머니와 가구주의 평균 연령 차이는 27.8세(표준편차 5.8세)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연령이  $a(\geq 65)$ 인 고연령 남성 가구주 가구에 잠재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혼 자녀 가구의 풀(pool)은 가구주 연령이  $a - 31$ 이면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2인 이상 기혼부부 가구, 연령이  $a(\geq 65)$ 인 고연령 여성 가구주 가구에 잠재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혼 자녀 가구의 풀(pool)은 가구주 연령이  $a - 28$ 이면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2인 이상 기혼부부 가구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할 때 2012년 자료에서 결합 대상

31) 이 방법은 전국가계동향조사(2012)가 우리나라 가구분포의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는 전제하에 합리성을 갖는다.

32) 여기서는 부모 동거와 비동거의 결정이 최소한 연령 차이와는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고연령 가구는 1,667개 가구이며, 잠재적인 기혼 녀 부부 가구는 4,819개로 추산되었다.

고연령 가구의 수보다, 잠재적 결합대상 기혼부부 가구의 수가 많기 때문에 고령가구를 자녀 가구에 어떻게 결합시키는데 따라 사적이전지출을 통한 불평등도 완화효과가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는 결합방식에 따라 사적이전지출의 효과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우선 연령이  $a$ 인 고연령 가구의 수를  $N_a$ , 잠재적 결합대상 기혼부부 가구의 수를  $M_a$ 라고 하자.  $N_a$ 개의 고령층 가구를 1인당 취업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번호  $i$ 를 매기고 ( $i = 1, 2, \dots, N_a$ ), 유사하게  $M_a$ 개의 결합대상 자녀가구를 1인당 취업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번호  $j$ 를 부여한다( $j = 1, 2, \dots, M_a$ ). 가상 추정에서는 고령가구와 자녀가구의 결합에 있어서 1인당 취업소득의 순위는 역전되지 않는 경우만 고려한다. 즉,  $i$ 번 고령가구에  $j(i)$ 번 자녀 가구가 결합되고,  $k$ 번 고령가구에  $j(k)$ 번 자녀 가구가 결합될 경우  $k > i$ 라면, 반드시  $j(k) > j(i)$ 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소득에 따른 순위가 역전될수록 사적이전지출의 효과 이외에 저소득인 고연령 가구가 고소득 자녀가구와 결합되고, 고소득 고연령 가구가 저소득 자녀가구와 결합되어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둘째, 부모와 자녀 간에 소득력(earnings power)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가구와 고연령 가구를 가상적으로 결합할 때 1인당 취업소득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도록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M_a > N_a$ 이기 때문에 소득의 순서를 유지하는 제약 하에서도 고연령 가구와 자녀 가구들 간에 일대일 결합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녀 가구들에서  $N_a$ 개의 가구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임의로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녀 가구들에서 1인당 취업소득이 가장 낮은  $N_a$ 개의 가구와 고연령 가구를 결합하는 경우, 1인당 취업소득이 가장 높은  $N_a$ 개의 가구와 결합하는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1인당 취업소득이 중간인  $N_a$ 개의 가구와 결합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고연령 가구의 1인당 취업소득이 상당히 낮은 만큼, 소득 순서를 역전시키지 않는다는 제약 하에서는 소득이 높은 자녀 가구들과 결합시킬수록 소득 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클 것이므로 이러한 세 추정치를 통해 1~2인 가구에 속한 고연령층에 대한 기혼 자녀와의 가상적인 소득 공유, 또는 사적이전지출을 통해 소득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효과에 대한 가상적 범위(range)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에서는 위의 방식에 의해 추정된 1인당 취업소득의 불평등도(지니계수)를 보이고 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원래 가구구성하에서의 1인당 취업소득 불평등도로서 앞선 <표 4>의 첫 행과 동일한 값이다. 2인 이하 고연령 가구를 소득이 낮은 자녀 가구들과 결합시킬 경우 1인당 취업소득의 지니계수는 .369에서 .364로 소폭 감소한다. 한편 소득이 중간인 자녀 가구와 결합시킬 경우 지니계수는 .345로 감소하며, 소득이 높은 자녀 가구와 결합시킬 경우 지니계수는 .313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다. 소득이 높은 자녀가구와 결합될수록 고연령 가구의 저소득이 해소되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적이전지출에 의한 불평등도 완화효과는 크게 추정되고 있다.<sup>33)</sup>

그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 내에서 지니계수는 대폭 감소하지만, 64세 이하에서는 오히려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소득이 낮은 자녀 가구들, 또는 소득이 중간인 자녀 가구들이 저소득 고연령 가구와 결합되면서, 자녀 가구의 1인당 취업소득이 더 낮아지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높은 자녀 가구와 가상적

<표 5> 가상적 사적이전지출의 효과 I

1인당 취업소득의 지니계수	전 체	64세 이하	65세 이상
원래 가구구성	.369	.333	.614
소득이 낮은 자녀 가구와 가상적 결합	.363	.354	.362
소득이 중간인 자녀 가구와 가상적 결합	.345	.349	.276
소득이 높은 자녀 가구와 가상적 결합	.313	.310	.321
정부의 제도적 개입 결과1)	.340	.316	.492

주 : 1) <표 4>의 마지막 열에 수록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33) 모든 2인 이하 고연령 가구가 가상적 자녀 가구와 결합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2인 이하 고연령 가구의 50%만 무작위로 선발하여 자녀 가구와 결합시킬 경우, 지니계수가 소득이 낮은 자녀가구와 결합될 때 .367, 소득이 중간인 자녀가구와 결합될 때 .357, 소득이 높은 자녀가구와 결합될 때 .331로 추정된다. 이는 <표 5>에서보다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소득 불평등도 완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로 결합될 때에는 64세 이하의 지니계수도 하락하는데, 이는 고소득 자녀가구의 1인당 취업소득이 고연령 가구와의 결합을 통해 낮아지는 효과를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65세 이상의 소득 불평등도는 소득이 중간인 자녀 가구들과 결합될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는데, 이는 1인당 취업소득이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나 매우 높은 경우가 배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상적 추정 결과를 정부의 제도적 개입에 의한 변화(표의 마지막 행)와 비교하면, 동거 또는 사적이전지출을 통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비동거에 따른 불이익 해소가 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sup>34)</sup> 1인당 취업소득의 지니계수는 .369 수준인데, 여기에 정부의 제도적 개입(조세, 연금, 사회적 수혜금 등)이 추가되면 지니계수가 .340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고연령층이 기혼 자녀와 동거하고 가구소득을 공유할 경우 1인당 소득의 지니계수는 결합방식의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지만, 중간 경우를 볼 때 .345로 정부 개입의 효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불평등도보다 저소득 그룹에 초점을 맞추어 절대 빈곤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sup>35)</sup> <표 6>에서는 위의 <표 5>의 각 소득 공유 시나리오에 따라 절대빈곤율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적이전지출에 의한 소득 공유는 절대빈곤율 해소에 매우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36)</sup>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사적이전지출을 통해 저소득 노인 가구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기에 사적이전지출의 절대 빈곤 해소 효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노인들에 대한 연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의 노인 가구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실제로 절대빈곤을 해소(56.7%에서 47.8%로 8.9%p 하락)하는 데 제한된 효과만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가구와 노인 가구 간의 사적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공유를 통해 노인들의 절대 빈곤을 추가적으로 해소시킬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4) 또는 핵가족화에 따라 고연령층이 자녀와 동거하는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소득에 불이익이 유발되는 효과가 소득 불평등도 악화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35) 절대빈곤에 대한 효과는 익명의 심사자가 제안하였는데, 실제 본 논문의 결론에 상당히 중요한 추가 실증근거가 얻어졌다. 이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36) 절대빈곤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2012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53,354원, 2인 가구 942,197원, 3인 가구 1,218,873원, 4인 가구 1,495,550원, 5인 가구 1,772,277원 등을 적용하였다.

〈표 6〉 가상적 사적이전지출의 효과 II

1인당 취업소득에 기초한 절대빈곤율(%)	전체	64세 이하	65세 이상
원래 가구구성	15.2	9.5	56.7
소득이 낮은 자녀 가구와 가상적 결합	15.0	12.2	36.0
소득이 중간인 자녀 가구와 가상적 결합	9.4	9.3	10.8
소득이 높은 자녀 가구와 가상적 결합	9.3	9.2	10.2
정부의 제도적 개입 결과	13.5	8.9	47.8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2012)」.

〈표 6〉의 결과에서 하나 유의할 점은 고연령 가구가 소득이 낮은 자녀가구와 결합될 경우 고연령층의 절대빈곤은 감소하지만 자녀가구의 절대빈곤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자녀의 소득력(earnings power)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저소득 부모의 자녀도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의 결과는 저소득 고연령층에 대한 자녀의 부양을 강조할 경우 현실적으로 자녀가구의 빈곤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연령 부모가구에 대한 자녀의 사적이전지출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 및 부모가구가 사적이전지출을 통해 소득을 공유한다면 전체적으로 빈곤가구의 빈도는 증가할 수도 있지만, 빈곤의 정도는 항상 감소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절대빈곤선이 100만 원이라고 하고 자녀가구의 소득은 150만 원 부모가구의 소득은 0이라고 하자. 이 경우 빈곤가구는 부모가구 하나이다. 이때 사적이전지출을 통해 소득을 공유하면 가구별 소득은 75만 원으로 두 가구 모두 빈곤가구가 된다. 그러나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전자의 경우 100만 원(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인데 비해, 후자의 경우 50만 원(각 가구에 25만 원씩)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빈곤퇴치 정책기조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적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공유의 결과 빈곤의 빈도는 일부 증가할 수도 있으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항상 감소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유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고연령 가구와 자녀 가구 간 소득 순위의 역전을 허락하지 않는 매우 보수적인 제약 하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동거 또는 보다 현실적으로는 기혼 자녀와 부모 간 사적이전지출을 통해 소득 불평등도 및 절대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적이전지출이 고연령 가구에 대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잠재적 효과가 클 수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과 조세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적이전지출을 오히려 구축(crowding-out)할 개연성이 높은 고연령 가구 소득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이 가구구성 및 소득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 구성원의 소득 불평등으로 투영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2012년 자료에 기초한 결과, 가구주가 얻는 임금 및 사업소득의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추가적인 가구원의 취업 및 소득활동을 통해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되며, 또한 가구원들의 가구소득 공유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있어서 가구 규모의 경제, 즉 공동소비에 의한 효과도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가구원 수의 역할, 즉 많은 가구원이 소득을 한데 모아 공유하는 양상이 소득 불평등도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인 및 2인 소규모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그 분포도 매우 불평등한 점이 전체 소득 불평등도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연령층이 가구주인 1~2인 가구의 소득이 매우 낮아 전체 가구들 간의 소득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유사 연령층에 비해 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적이전수입도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정부의 제도적 개입, 특히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 등이 감안될 경우 65세 이상 고연령층 소규모 가구의 소득 불

평등도는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연령층의 소득보전과 관련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은 주로 징세와 이전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 없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효율성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 가구원에 의한 소득 공유가 불평등도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고연령층 독립가구에 대해 기혼 자녀들의 사적 이전지출이 중요한 소득 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즉, 핵가족화 추세 자체가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핵가족화로 인해 고연령층 독립가구들 가운데 소득 공유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 불평등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기혼 자녀들로부터의 이전 수입을 통해 고연령층 가구에게도 충분히 소득 공유 효과가 발생한다면, 고연령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 필요성도 낮아지고, 그만큼 재정지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제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적이전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본고의 결과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있으며, 또한 사적이전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이르다고 판단된다.<sup>37)</sup> 굳이 논의를 해 본다면, 고연령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에 있어서 부양가족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38)</sup> 물론 이와 같이 부양의무를 강조할 경우 세대 간 소득력(earnings power)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가난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구의 빈곤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자녀의 부양의무만을 강조하고 복지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부양의무를 강조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빈곤억제 효과, 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익명의 심사자는 증여세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본 논문의 결과가 이에 대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시사점을 주기에는 아직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38) 최근 노인복지지출과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본인 및 자녀의 재산, 소득 등을 검증하는 means-tested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도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대일. 「임금밀도함수의 변화 및 구성 분해 : 2000~2007년」. 『노동경제논집』 36권 3호 (2013): 29-63.
- 김우철·민희철·박상원.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반정호. 「가구구성방식의 다양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권 1호 (2011): 85-111.
- 이철희. 「1996~2000년 한·미의 가구소득불평등 확대」. 『노동경제논집』 31권 2호 (2008) : 1-34.
- 최바울. 「부부의 노동소득과 취업상태가 소득불평등 변화에 미친 영향」. 『노동경제논집』 36권 3호 (2013): 97-128.
- Becker, Gary S. “A Theory of Marriage :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4, (1973): 813-46.
- Becker, Gary S. “A Theory of Marriage :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part 2), (1974): S11-S26.
- Becker, Gary S. *A Treatise on Famil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orjas, George J., and Valerie A. Ramey.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 Inequality and International Trade.” in Jeffrey H. Bergstrand et al. (eds.)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Income in an Open US Economy*. Amsterdam : North-Holland, 1994.
- Burtless, Gary.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 (1999): 853-865.
- Cline, William R. *Trade and Income Distribution*.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 Daly, Mary C., and Robert G. Valletta. “Inequality and Poverty in United States:

- The Effects of Rising Dispersion of Men's Earnings and Changing Family Behaviour." *Economica* 73 (2006): 75-98.
- de la Croix, David, and Matthias Doepke. "Inequality and Growth : Why Differential Fertility Matters," *American Economic Review* 93(4) (2003) : 1091-1113.
- Feenstra, Robert C., and Gordon H. Hanson. "Globalization, Outsourcing, and Wag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86(2) (1996): 240-245.
- Fernandez, Raquel, and Richard Rogerson. "Sorting and Long-Run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4) (2001): 1305-1340.
- Katz, Lawrence F., and Kevin Murphy.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1) (1992) : 35-78.
- Kremer, Michael. "How Much Does Sorting Increase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1) (1997) : 115-139.
- Kremer, Michael, and Daniel L. Chen. "Income Distribution Dynamics with Endogenous Fertility." *Journal of Economic Growth* 7 (2002) : 227-258.
- Lam, David. "Marriage Markets and Assortative Mating with Household Public Goods : Theoretical Results and Empirical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4) (1988) : 462-487.
- Lawrence, Robert Z., and Matthew J. Slaughter. "Trade and US Wages: Great Sucking Sound or Small Hiccu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93) : 161-226.
- Lazear, Edward P., and Robert Michael. "Family Size and the Distribution of Real Per Capita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70(1) (1980) : 91-107.
- Lerman, Robert I. "The Impact of the Changing US Family Structure on Child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Economica* 63 (1996) : S119-S139.
- Lise, Jeremy, and Shannon Seitz. "Consumption Inequality and Intra-household Alloca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8 (2011) : 328-355.
- Martin, Molly A. "Family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in Families with Children, 1976 to 2000." *Demography* 43(3) (2006) : 421-445.
- Muellbauer, John. "Testing the Barten Model of Household Composition Effects and the Cost of Children." *The Economic Journal* 87 (1977) : 460-487.
- Pollack, Robert A., and Terence, J. Wales "Demographic Variables in Demand

Analysis.” *Econometrica* 43(3) (1981) : 1533-1551.

Smith, James P. “The Distribution of Family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 (1979) : S163-S192.

Wood, Adrian. *North-South Trade, Employment and Inequality : Changing Fortunes in a Skill-Driven World*. New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abstract

---

## Household Formation and Income Inequality

Dae Il Kim, Simon Sokbae Lee, Yoon-Jae Wha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household formation on the mapping from wage inequality to income inequality, which usually is smaller than the former. Added workers, income pooling among household members, and shared consumption are the factors that make income distribution less inequal than wage distribution, and the effect of income pooling appears to be the greatest. This suggests that the increase in nuclear families and the resulting increase of old families have a potential effect of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t the absence of sufficient private income transfers among the two households. A simple counter-factual estimate indicates that income pooling among the children's and parents' households can efficiently and sizeably reduce income inequality.

Keywords: Income inequality, income pooling, private transfer